

# 공 유 재 산 관 리 제 획 ( 취 득 승 인 안 )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.

## 2. 주요내용

-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## 3. 취득 승인요청

-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 재산은 공영 노외 주차장 설치부지로써
-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~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00,000 천원이 되겠습니다.

## 4. 취득방법

-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 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.

## 5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
## 6. 검토의견
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
-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~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-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 하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 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공유재산 취득 안에 따른 승인 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.